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 의제 근거 조항 신설 등 〉
■ 정부(의안번호 제221996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 개선(안 제2조·안 제34조· 안 제70조)	3
2.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8조 신설 및 안 제40조)	5

I. 제안경위

가. 제 출 : 정 부

나. 발 의 일 : 2026. 7. 15.

다.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 개선(안 제2조·안 제34조·안 제70조)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법률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안 제34조·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시·도지정문화유산: <u>특별시장</u>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생략) ④ 삭제 ⑤ ~ ⑬ (생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특별시장</u> · <u>통합특별시장</u> ----- ----- ----- ----- 3. (현행과 같음)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 ----- ----- -----

현행	개정안
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u>특별시·광역시·도</u>(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 ⑦ (생략)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생략)	----- ----- -----. -----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u>-----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특별시·통합</u> <u>특별시</u>----- ----- ----- <u>특별시·통합특</u> <u>별시</u>-----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8.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2.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8조 신설 및 안 제40조)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상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승인의 의제)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같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현행	개정안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u>문화재보호법</u> 」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단서 신설>	7. ----- ----- ----- -----. <u>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4¹⁾는 같은 법 제33조의2²⁾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또는 제37조의4³⁾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제1호⁴⁾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1호⁵⁾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1)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고시한 것

3)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자연유산법」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

하고 있는 한편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⁶⁾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⁷⁾에 따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문화유산법」 제35조⁸⁾ 및 「자연유산법」 제17조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6) 「문화유산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자연유산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자연유산법」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그런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신청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설계승인과 현상변경 허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유산법」에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또는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수리법」의 현행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통해 관련 승인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 제38조제2항에서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또는 같은 법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착수·완료 보고 대상인 경우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허가·승인 간 의제 방향의 전환에 맞추어 신고·보고 체계를 정비하

면서도 중복 제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9967)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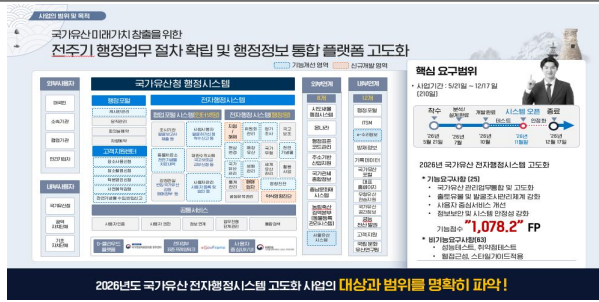
- 2026년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6년	797.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전자행정기능 고도화 (기능확대, 업무기능 개선 등)

- 사업기간 : 2026. 5. 21. ~ 12. 17.
-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연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기능 개선 등
- 진행사항
 - (2026. 6. 29.) 착수보고회 개최
 - 2026년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 추진방향 일정 등 공유
 - 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협조사항 안내



회의 사진



착수보고회 자료

○ 향후계획

- (~ 2026. 9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2026. 11월 말)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법률 개정 일정에 맞춰 오픈)